서울과학기술대학교규정 제631호

#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 기업부설협력연구소설치 운영규정

제정 2006. 2. 1.

개정 2010. 8.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홍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 제37조, 동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'우리대학교'라 한다)내에 기업의 연구소(이하 '협력연구소'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0.8.30.〉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'협력연구소'라 함은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대학교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의 연구소를 말한다.
- 2. '입주자'라 함은 산학협력단장과(이하 '단장'이라고 한다) 입주 계약을 맺고 승인 절차를 거쳐 기술개발 또는 시작품제작을 추진하는 협력연구소 대표를 말한다.
- 3. '기술개발'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또는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,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4. '시제품제작'이라 함은 사업화를 위하여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 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5. '졸업'이라 함은 입주자의 입주계약 만료 또는 입주자가 입주시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.

- 6. '퇴거'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함을 말한다.
- 7. '입주보증금'이라 함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협력연구소의 시설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한다.
- 8. '입주부담금'이라 함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소정의 운영관리비, 시설관리비, 공공요금, 공공 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말한다.
- 9. '성공부담금'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에 설립된 협력연구소가 공용시설, 기술, 경영육성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기부 또는 납부하는 주식 및 금품을 말한다.
- 제3조(기능) ① 단장은 입주자가 성공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입주자는 입주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
  - 2. 우리대학교 또는 소속교원과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한 업체
  - 3. 산학협정체결 업체 또는 산학협의회 가입 업체
- 제4조(입주자격) ① 입주자는 제3조2항을 충족하고 산업기술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 를 갖고 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한 사업자 이어야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 중인 자.
- 2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.
- 3.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.

- 4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.
- 제5조(입주신청) 입주를 원하는 기업대표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와 해당대학의 시설 및 장비 사용승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입주자 선정) ①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가 정하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총장이 입주자를 최종 선정한다.
  - ② 심사위원회는 사업성, 기술성, 인적구성, 물적구조 등을 종합 평가하며, 5인의 심사위원의 평점 중 중간 평점자 3인의 평균점수가 70/100이상인 자를 입주자로 추천하다.
  - ③ 선정된 입주자 중 부득이한 사정 또는 제4조에 의한 승인 취소 등으로 대체 입 주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심사 평가결과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을 워칙으로 한다.
- ④ 입주서 및 평가결과는 입주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.
- 제7조(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)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- ② 입주예정자는 지정된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.
- 제8조(입주기간 및 입주기간 연기) ①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.
  - ② 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희 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과 입주자의 협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입주보증금) 입주자는 입주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입주보증금을 산학협력단에 납입하여야 하며, 단장은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시 퇴거를 완료한

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화해야 한다.

- 제10조(입주부담금) 입주자의 협력연구소에 대한 입주부담금의 납입방법은 산학협력 단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11조(성공부담금) ① 졸업자 또는 퇴거자는 성공부담금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을 산학협력단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② 성공부담금의 납입 방법은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.
- 1. 졸업자 또는 퇴거자가 졸업 또는 퇴거 당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3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상당액(상속세 법에 의한 평가액)을 졸업 또는 퇴거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2. 졸업자 또는 퇴거자가 졸업 또는 퇴거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협력연구소 입주시부터 졸업 또는 퇴거시까지의 과세신고 소득금액의 6% 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졸업 또는 퇴거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3. 성공부담금의 무상 납입은 졸업일 또는 퇴거일로부터 6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 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한다.
- 4. 성공부담금의 유상 납입은 졸업 또는 퇴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외주식시장 에 등록될 때와 증자할 때에 입주계약서의 지분을 공시가격의 70%로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5. 퇴거자의 성공부담금은 입주기간의 비율에 따라 일부를 감면하고, 입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6. 기타 세부 사항은 입주자 대표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.
- ③ 입주자 또는 졸업자는 성공부담금 이외에 산학협력단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설지원) ①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우리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

할 수 있다. 단,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② 단장은 설비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. 단. 사용료는 우리대학교실 험실습에관한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정한다.
- ③ 단장은 협력연구소 내에 입주자의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학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. 단, 졸업 또는 퇴거시 에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.
- 제13조(손해배상) 입주자 및 고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의 시설물을 손상 또 는 분실하였을 경우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를 우리대학교에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입주보증금 정산)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입주부답금과 기타 대학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한다.
- 제15조(변경승인)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
  - 2. 우리대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 변경
  - 3. 법인 전환
  - 4.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
  -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
  - 2. 기타 변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부 칙

부 칙<제631호. 2010.8.30.>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

# I. 사 업 계 획 서

#### I -1. 사업개요

개발 ( 예 정 ) 품목 (대표적인 것만 기재)			
	용 도		
	구조 및 규격		
제품(기술)의 특성	성능 및 품질		
	경 쟁 성		
	장 래 성		
기 타 사 항	수입대체효과 관련산업에서 파급효과 등		
	기 술 개 발 추 진 현 황	□기술개발완료 □기술도입 □기타 (	□산업재산권보유(특허, 실용신안) □산업재산권출원(특허,실용신안) )

- 주) 1. 개발(예정) 품목/기술이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입주신청자가 기술개발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품목/기술과 비교하여 제품의 특성을 기재하고, 신제품/기술의 경우에는 기대되는 특성을 기재
  - 2. 기술개발 추진현황 : 해당사항에 "v"로 표시하고, 기타의 경우에는 ( ) 에 내용을 기재

### I-2. 기술명세서/개략도면

개발(예정)품목	

\* 품목이 다수이거나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.

# I - 3. 사업타당성

[시장규모, 국내·외 제품과의 비교, 유통구조 등]	
[시장규모, 국내·외 제품과의 비교, 유통구조 등]	

# I - 4.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

추 진	일 정	え	تا	내	Ω	추 진 방 법
부 터	까 지	Т	선	네	6	구 선 경 협

### I-5. 생산 및 판매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제품별구분	연도별	垣	년	년	년	년
	생산량					
	판매량					
	매출액					
	생산량					
	판매량					
	매출액					

### I-6. 인력 및 장비보유

#### 가. 참여인력현황

담 당 분 야	직 위	성 명	최종학력	비 고 (자격증 소지여부)

#### 나. 주요시설·장비보유 현황

시설·장비명	사 규 격	양 중량(kg)	수량	구입년도	용	도	비고

### I -7. 지원요구사항

임대호	티망면적	사 무 실	평	작 업 실	평
	경 영				
지 도	기 술 개 발				
	경 영				
연 수	기 술 교 육				
설 비					
기타					

주) 우리대학 입주기간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

#### [별지 제2호 서식]

	서울	과학기술대학교내 기업부설협력연구소 사용 신청서				
	소속	기업부설협력				
기업부설협력		연구소명				
연구소	책임교수	주민등록번호				
개요	(연구원)성명	(TIP)				
	소 재 지	(TEL : ) 기업부설협력				
	기업부설협력연	기업무실업력 연구소				
	구소위치	면적(m²)				
면 적 및 장비	주요장비내역					
	대표자 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			
레포키시크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			
대표자이력	대표자 주소					
주요개발품목						
비고						
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기업부설협력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실험실 장비사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0대학장 귀하						
※ 구비서투	Ť					
1. 사업계획서 2부 2. 협력연구소 배치도 2부						
	위와 같이 실험실(기업부설협력연구소) 사용을 승인합니다. 년 월 일					
	전 별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장 인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#### 기기이용신청서

기관명:	사용연월일: 년 월 일
/[천청·	사용시간 : ~ : ~
소속 직위	성 명
신 청 자 <mark>주민등록</mark> 번호	전 화 번 호
12-4-	1 2 2
실험내용 및	
목적	
사용기기	사 용 재 료
用	
<u> 1</u>	

본인은 00대학 00실험실의 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기기 사용 규칙을 준수하고, 본인의 부주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, 기기사용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: (인)

#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대학장귀하